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454
-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찬성의원 16명)
- 발 의 일 : 2021년 5월 27일
- 회 부 일 : 2021년 6월 1일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청년친화위원회 제도,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위원회 등 안정적으로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심의사항의 구체화 및 조례의 일부 규정을 상위 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용어 정비(안 제6조제2항 제4호 및 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청년 위원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2항제4호 및 제5항제2호).
- 청년친화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3조7호 및 제10조제3항).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의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의2).
- 청년인재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의3).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1. 6. 4. ~ 6. 11.)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청년친화위원회 제도,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청년인재추천위원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청년기본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청년기본법」 제15조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3조제7호는 이러한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1.~6. (생략)  <u>&lt;신설&gt;</u>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말한다.

- 다만,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시장에게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 이는 「청년기본법」 제15조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정의규정에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청년친화 위원회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
    -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 한편, 안 제6조제2항제4호와 안 제7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안에서 사용되는 상이한 용어를 통일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b>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b></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3. (생략)</p> <p>4.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위원회</u>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5. (생략)</p>	<p><b>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서울특별시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p> <p>5. (현행과 같음)</p>
<p><b>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b></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u>청년정책위원회</u>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청년정책조정위원회</u>-----.</p>

-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9조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개정(2020.09.15.)하면서 함께 개정되지 못한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p><b>「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b></p> <p><b>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b></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li> <li>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

- 안 제9조제2항제4호는 안 제3조제7호의 정의 규정 신설과 연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 및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을 추가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임.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청년친화위원회의 범위와 청년 위촉비율 결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동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현행 제9조제5항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 바, 안 제9조제5항제2호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을 ‘청년단체 등에서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청년단체 등에서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 기존에 ‘청년단체’로만 제한하고 있던 위촉직 위원의 경력 사항을 ‘청년단체 등에서 청년 활동 경험’으로 확대하여, 보다 더 다양한 청년활동가의 위촉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많은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참여하도록 하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청년단체 등’이 어떠한 청년단체까지 포함하려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제3조제3호(용어의 정의) 규정에 ‘등’을 명시하거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에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안 제10조의2는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할 청년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2(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할 청년들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데이터베이스 담당 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청년인재’등록을 통해 서울시 11개 분야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왔음.
  - ※ 서울시 위원회 11개 분야 : 복지, 경제, 여성가족, 주택도시계획, 문화관광, 건강, 환경, 안전, 행정기타, 교통건설, 세금재정분야

- ‘서울청년인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으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내 ‘미래인재 등록 신청’을 통해 활동희망분야를 선택하여 청년인재 풀에 기본정보와 경력을 작성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서울시는 해당 인재 풀에서 서울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서울미래인재 모집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모집개요**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서울 거주 또는 서울 기반으로 활동 중인 만 19~39세 청년
등록절차	• 서울청년포털 접속 → 로그인(서울시 회원) → 미래인재 등록 신청
정보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필수</b>: 성명, 성별, 현재소속, 직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역, 위원회 참석 가능일자, 활동희망분야, 학력</li> <li>• <b>선택</b>: 학력, 자격증 및 면허, 주요경력, 수상경력 등</li> <li>※ 선택사항 부실 입력 시 추천 및 위촉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정보 입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li> </ul>
활동 희망분야	• 건강,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세금재정, 안전, 여성가족, 주택도시 계획, 행정, 환경 등 11개 분야 중 활동을 희망하는 3개 분야를 선택

○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점검·보수 지속**

- 보다 효율적인 미래인재 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등록자 및 관리자 시스템 점검 및 개선 지속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0조의2제1항), 집행부에 답변의무를 부과함으로써(동조 제2항)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위원의 추천과 위촉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조례의 신설 규정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오남용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1)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2018.4.1.)」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를 위한 청년청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온 것에 대한 청년청의 책임 있는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안 제10조의3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청년인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3(청년인재추천위원회)**

-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인재추천위원회(이하 “청년인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청년인재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 1. 청년정책 혹은 인재추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운영 등의 경험과 민관 거버넌스 경험을 지닌 사람
  - 3. 청년들의 관심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서울시는 기존 위원회에서 낮은 청년비율(5.1%)을 15%까지 올리는 ‘청년위원 15% 목표제’를 추진 중에 있고, 본 개정 조례안에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통해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을 심의·조정(안 제9조제2항제4호) 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인재 풀을 수집·관리(안 제10조의2)하고 있는바,
  - 이를 통해 각종 위원회에 추천할 청년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청년인재 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은 청년위원 추천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결격사유, 회의의 소집 시기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의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명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개정조례안 동조 제2항에서 청년인재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 9.)」에서 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적정인원(15명 이내가 바람직)으로 정하되,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sup>3)</sup>에서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 9.)」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은 위원회는 자문단, 협의체 등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청년청은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인재추천위원회를 조례에 명시하기 이전인 2019년에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DB 구축 계획’과 함께 ‘인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음.

**인재추천심의회 구성**

○ 구성 현황 : 총 8명 / 임기 2년('19. 8. 2.~'21. 8. 1.)

연번	성명	주요이력	출생년도	성별	구분
1	송문식	(사)마을 이사장	1969	남	마을(협치)
2	조성주	前 서울시 노동협력관	1978	남	노동/경제
3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976	남	복지
4	김소연	前 서울시 협치지원관	1980	여	거버넌스
5	김주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팀장	1983	여	문화
6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1966	남	청년주거
7	주무열	서울시 관악구 구의원	1985	남	자치구
8	조완석	청년청장	1972	여	당연직

○ 구성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추천을 통해 위촉

-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기준에 준하는 경력을 지닌 자
-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운영 등의 경험과 민관 거버넌스 경험을 지닌 자
- 청년들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운영내역

일시	장소	안건
2019.8.2.	청년청 회의실	- 인재추천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 2019년 제3기 청년정책위원회 공개모집 위원 선정
2019.11.6.	서면심사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여성 추천자 선정
2020.8.4.	서면심사	서울미래인재 기자단 선발(10명)
2021.3.12.	서면심사	2021년 서울미래인재 기자단 선발(20명)
2021.5.20.	서면심사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추천자 선정

□ **소요예산 : 5,410천원**(위원 참석수당 등)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다과비 등
  - 150천원 × 7명 × 5회 : 5,250천원
  - 4천원 × 8명 × 5 회 : 16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 획기적 개선, 청년의 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서울미래인재 양성 및 DB 구축, 사무관리비

- 따라서 본 조례개정 전 청년청의 법적 근거 없는 인재추천심의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9.)」에 반하여 운영된 것은 아닌지,
  -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위법하게 지급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현행 인재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에 대한 부칙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민정
------	-----	-------	-----